

# 외국인유학생 유치·관리 위원회 운영규정

<개정 2021.03.12.>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유치전략 수립 및 학사지도, 생활지도, 학생면담, 취업지도 등 외국인유학생의 전반적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외국인유학생유치·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외국인유학생유치에 관한 사항
- ② 외국인유학생의 학사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
- ③ 외국인유학생의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
- ④ 외국인유학생과 기타 관련된 사항

**제3조(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)**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 또한, 위원 중 국가별 전담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.<개정 2021.03.12.>
- ③ 위원은 외국인유학생이 소속된 계열장(전공장), 학과장 및 유관 행정부서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

-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**제6조(회의 및 의결)**

-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/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간사)**

-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는 대외협력팀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21.03.12.>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지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(2015.3.3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03.1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